◉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-140호

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-21호(2003.10.30.)로 지정되고,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-19호(2005.8.24.), 경상남도 고시 제2008-18호(2008.1.24.),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111호(2009.6.4.),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262호(2009.11.24.),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-104호(2011.6.30.), 경상남도 고시 제2012-543호(2012.12.18.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-118호(2013.10.23.), 경상남도 고시 제2014-2호(2014.1.8.), 경상남도 고시 제2016-1호(2016.1.8.), 경상남도 고시 제2016-321호(2016.9.26.), 경상남도 고시 제2017-477호(2017.11.24.), 경상남도 고시 제2018-420호(2018.11.8.), 경상남도 고시 제2019-515호(2019.12.5.), 경상남도 고시 제2020-283호(2020.6.11.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190호(2020.11.18.), 경상남도 고시 제2021-245호(2021.5.6.), 경상남도 고시 제2022-1호(2022.1.13.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-176호(2022.10.25.)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07월 07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

◈ 주요 변경사유

○ **(산업유치계획) 유치업종 6개 추가(9개 → 15개)**

-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배후단지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그린테크 융복합 산업단지로 재도약
- 중점유치업종, 우주항공정책,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융복합으로 6대산업 유치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

◈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

1. 개발사업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: 변경 없음

2.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: 변경 없음

3. 개발사업시행자 : 변경 없음

4.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: 변경 없음

5. 재원조달방법 : 변경 없음

6. 토지이용계획 : 변경 없음

7. 주요 기반시설계획 : 변경 없음

8.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: 변경 없음

9. 교통처리계획 : 변경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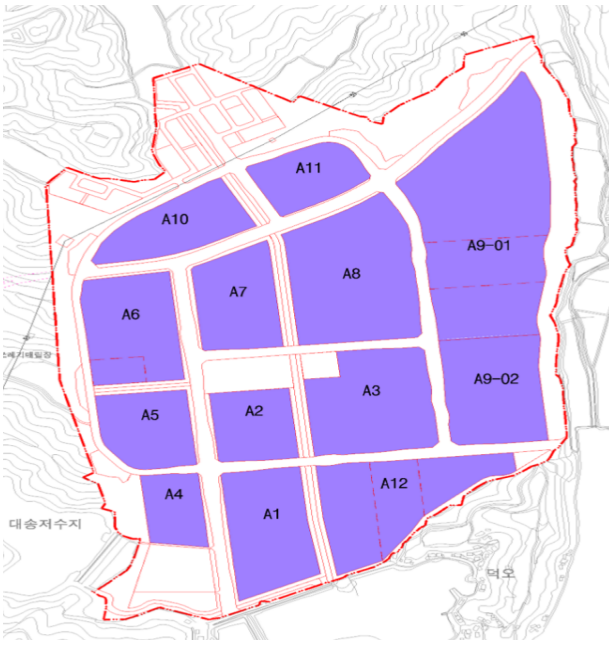
10. 산업유치계획 : 변경

○ 업종별 배치계획표 : 변경

구 분			기 정		변 경		구성비 (%)
			면적(㎡)	획지	면적(㎡)	획지	
합 계			809,791		809,791		100.0
금속가공제품;기계 및 가구제외		C25	809,791	전체 산업 시설 용지	809,791	전체 산업 시설 용지	100.0
기타운송장비제조업		C31					
식료품 제조업		C10					
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	C23					
1차금속 제조업		C24					
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		H52					
전기,가스,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	태양력발전업(35114)	D35					
	기타 발전업(35119)						
	송전 및 배전업(35120)						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(추가)		**C20**	-	-			
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추가)		**C22**	-	-			
전기장비 제조업(추가)		**C28**	-	-			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추가)		**C29**	-	-			
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추가)		**C34**	-	-			
연구개발업(추가)		**M70**	-	-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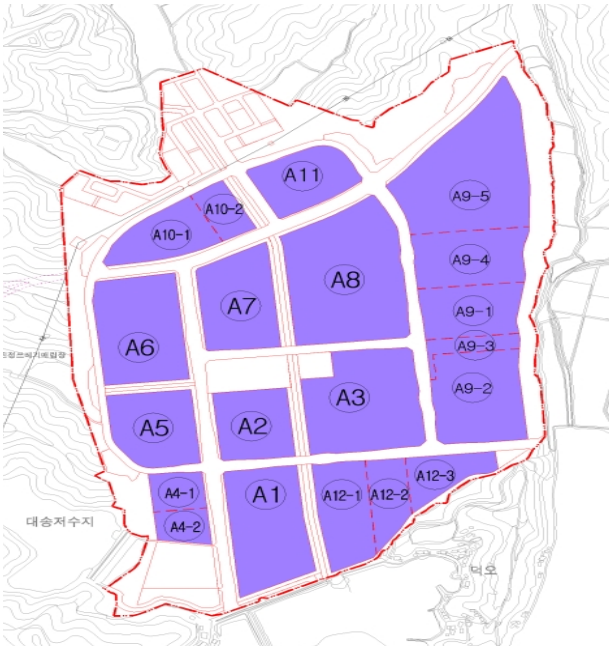
○ 업종별 배치계획도 : 변경

기 정



유치업종(코드)	
식료품 제조업(C10)	금속가공제품 제조업 : 기계 및 가구제외(C25)
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)	기타운송장비 제조업(C31)
1차 금속 제조업(C24)	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(H52)
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 조절업 : 화력발전업 제외(D35)-기타발전업, 태양력발전업, 송전 및 배전업	

변 경 (안)



유치업종(코드)	
식료품 제조업(C10)	**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C20)**
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)	**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**
1차 금속 제조업(C24)	**전기장비 제조업(C28)**
금속가공제품 제조업 : 기계 및 가구제외(C25)	**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**
기타운송장비 제조업(C31)	**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C34)**
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(H52)	**연구개발업(M70)**
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 조절업(D35) 중 기타발전업(D35119), 태양력발전업(D35114), 송전 및 배전업(D35120)	

11. 보건의료·교육·복지시설 설치계획 : 해당 없음

12. 환경보전계획 : 변경 없음

13.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: 변경 없음

14.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: 해당 없음

15.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: 해당 없음

1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: 해당 없음

17. 문화시설·공원·녹지계획 : 변경 없음

18. 도시경관계획 : 변경 없음

19.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: 해당 없음

20.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: 변경없음

21.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: 해당 없음

22.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: 해당 없음

23.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·수립·확정·승인·변경 등 의제사항 : 해당 없음

24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

○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(055-880-6514)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